

의안번호	2217067
의 퇴 인	조은희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5.
추계번호	26C1106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2조의5 (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등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※ (안 제20조)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음 (제4항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후견 및 신탁 상담을 실시하고, 필요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등을 지원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4항) 재량규정
2	안 제12조의6 (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)	안 제12조의5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한 기관은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2조의8 (법률구조 지원)	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맺은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2조의9 (디지털조력권보장등)	(제1항) 국가는 치매환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조력권을 보장하여야 함 (제2항)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하여 치매 친화적 사용자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2조의10 (치매환자가족의 돌봄 휴직및간병 휴식지원)	(제1항) 국가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직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(제2항)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단기 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‘간병 휴식제’를 운영할 수 있음 (제3항) 국가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가족 간병 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2항· 제3항)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5 (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의6 (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)	
3	안 제12조의8 (법률구조 지원)	
4	안 제12조의9 (디지털 조력권 보장 등)	
5	안 제12조의10 (치매환자가족의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등을 위한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, 가족휴가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
 -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치매 등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대하여 재산을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재산배분·보관 등 전문적, 맞춤형 재산관리를 제공하는 ‘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’을 실시
 - － 2026년 예산에 14억 8백만원 편성
 - 또한, 장기요양 1~2등급, 치매가 있는 3~5등급,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가족이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,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연간 단기보호급여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 24회를 제공하는 ‘장기요양 가족휴가제’를 시행하고 있음
-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 도입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기존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규모, 신규로 시행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